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060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피고A

변론 종결2023. 1. 12.

판결 선고2023. 2. 2.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2. 3. 8. 접수 제142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및 2019. 11. 28. D대학교 구내식당의 대표자인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E	F
보증내용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일자	2017. 9. 21.	2019. 11. 28.
보증기한	2022. 9. 19.	2024. 11. 20.

나.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G은행으로부터 2017. 9. 21. 30,000,000원, 2019. 11. 28.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22. 2. 22.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8. 4. G은행에 54,986,1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450,677원을 상계처리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54,535,443원이 되었다.

라. 한편, B는 2022. 3. 8.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거래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22. 2. 22. B의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의 채무초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I,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70,000,000원
2	포항시 북구 J 임야 477㎡ 중 1/2 지분	55,000,000원
3	포항시 북구 K 임야 157㎡ 중 1/2 지분	
4	포항시 북구 L 대 198㎡	22,945,000원
5	포항시 북구 L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4.46㎡	855,000원
합계	148,800,000원	

나) 소극재산

1	G은행	54,340,000원
2	H조합	27,590,000원
3	M조합	22,000,000원
4	G은행(2020. 9. 17.자)	14,334,000원

1	G은행	54,340,000원
5	G은행(2021. 6. 8.자)	18,572,000원
6	신용보증기금	9,640,000원
7	피고	75,000,000원
합계	221,476,000원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가 피고로부터 2015. 2. 9.부터 2019. 1. 14.까지 차용한 75,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피고와 사이에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로 말미암아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B의 H조합, M조합,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124,590,000원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하경

별지